

반체벌법에 관한 국민투표

“ 부모로서 자녀에 대한 올바른 교육을 위해
가벼운 체벌을 가하는 것을 범죄행위로 간주함이 옳습니까?”

“Should a smack as part of good parental correction
be a criminal offence in New Zealand?”

vote NO

“아니요” 라고 답을 하시기 원합니다.

투 표 기 간

July 31 – August 21 2009

참된 부모들을 보호합시다.

아동학대의 근원을 발본해야합니다.

Protect Good Parents

Tackle the Real Causes of Child Abuse

이 국민투표에 관한 진실을 밝혀주는 모든 답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FACT SHEET

www.VOTENO.org.nz

▶ 왜 “반체벌” 법이라고 불리게 되었을까요?

Why is it called the “anti-smacking” law?

이는 이 법령을 개정한 Green Party의원인 Sue Bradford가 고안하여 그렇게 명명하였고, 이를 지지한 단체들 즉, Barnardos, Plunket, and the Children’s Commissioner 등이 체벌 행위를 추방하기로 요구한데서 기인한 것입니다.

This is what the architect of the law change (Green MP Sue Bradford) called it! Groups who supported it such as Barnardos, Plunket, and the Children’s Commissioner have all been calling for a ban on smacking.

▶ 그 법에는 어떻게 명기되어 있나요?

What does the law actually say?

조항 59. 부모의 통제

(1) 모든 부모나 그 역할을 담당하는 이들은 아동에게 물리적 힘을 사용함에 있어 정당한 근거나 명분이 있어야 하는데, 그 것은 아래의 상황에 부합해 이로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이 되어지는 경우에 한한다.

- (a) 아동 자신에게나 다른 이에게 미칠 수 있는 피해를 줄이기 위한 경우,
- (b) 아동이 범죄행위에 연루되는 것을 예방키 위한 경우.
- (c) 아동이 포악하거나 불손한 행위를 저지를 경우,
- (d) 부모로서 아동에 대해 올바른 보호의 차원에서 일상적이며 정상적인 책임의 일환으로 행한 경우.

(2) 그 어떤 형태로든 아동의 행위를 고치려는 목적에서 물리적 힘을 가하는 것은 정당화 될수 없다.

(4) 위의 행위가 비록 경미하여 일반 대중에게 별 형사적으로 문제시되지 않는다 해도, 고발이 있을 시 이에 대한 형사처벌여부에 관해서는 경찰의 분별력에 의존한다.

59 Parental control

(1) Every parent of a child and every person in the place of a parent of the child is justified in using force if the force used is reasonable in the circumstances and is for the purpose of—

- (a) preventing or minimising harm to the child or another person; or
- (b) preventing the child from engaging or continuing to engage in conduct that amounts to a criminal offence; or
- (c) preventing the child from engaging or continuing to engage in offensive or disruptive behaviour; or
- (d) performing the normal daily tasks that are incidental to good care and parenting.

(2) **Nothing ... justifies the use of force for the purpose of correction.**

(4) To avoid doubt it is affirmed that police have the discretion not to prosecute complaints ... where the offence is considered to be so inconsequential that there is no public interest in pursuing a prosecution. (*abbreviated*)

▶ 그럼 이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건가요?

What does this mean?

네, 참 혼란스럽지요. 그러나 기본인 즉은, 부모가 아동의 행위를 고치려해서 신체적인 접촉이나 힘을 행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단지 악한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면 몰라도.

허나, 많은 경우에서 보면 교정과 예방은 그 구별이 불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행위를 예방하는 것이 때론 그 것들을 교정하는 것일 수 있지요.

Yes it is confusing, but basically, a parent cannot use physical contact or force to correct their child’s behaviour, only to prevent bad behaviour. But the distinction between prevention and correction is unclear in many cases. Preventing particular behaviour will often amount to correcting them.

또한 법령을 경찰의 분별력에 의존한다는 것이 혼란을 야기하기도 합니다. 시민들은 법률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그리고 어떤 경우에 그 불명확한 공권력에 처해질 수 있다는 것인지를 알 권리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경찰의 분별력에만 의존한다는 것이 그 어느 공기관 (예를 들자면 Child, Youth and Family와 같은) 에도 적용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The law also creates confusion with its reference to Police discretion. Citizens have a right to know what the law requires and not to be subject to arbitrary enforcement. In addition, it refers only to Police discretion. It does not apply to any other agency, such as Child, Youth and Family (CYF).

▶ 그럼, 모든 교정행위가 다 나쁘다는 것인지 아니면 단지 가벼운 체벌만을 말하는 것인지?
Is all 'correction' deemed bad, or just smacking?

재미있는 질문이군요. 최근에 있는 Early Intervention Association(조기아동교육및 안전관진을 위한 사회공익단체)의 회의에서 'naughty chair'나 'time out' (아래 설명 참조)이 그리 윤리적이 못하며, UN의 아동권리장전에 어긋난다는 의견이 개진되었습니다. 아마도 다른 형태의 적절하고 효과적인 교정이 금지되게 될테지요.

Naughty Chair(or time out) works by removing misbehaving toddlers to a location whilst everything else in the household carries on without their involvement. The "chair" can be a chair, step, corner or anywhere where there are no distractions and the child is old enough to sit. They are told to remain there for a fixed period (one minute per year of age) as punishment and allowing them time to reflect on their actions and consequences of it.

Interesting question! At a recent Early Intervention Association conference, they were told 'time out' and the 'naughty chair' are unprofessional and in breach of the United Nations (UN) Declaration of the Rights of the Child. Perhaps other forms of appropriate and effective parental correction will be banned.

▶ 어떤 이들은 모든 경미한 체벌이 금지되어야 한다고 하고, 어떤 이들은 아니라고 하는데...
Some people say that all smacking is banned, others say that it's not.

그 것이 한 편으로보면 문제점입니다. 반체벌법의 지지자들이 그 법으로 인한 진정한 결과를 은폐함으로써 대중을 혼돈케 합니다. 예를 들자면, Green 정당의 Sue Bradford의원이 말한 아래 3가지를 한 번 비교해 보세요.

2007년 ; '아동에게 경미한 체벌을 하는 것은 오래 전부터 불법적이다.'

2008년 ; '경미한 체벌은 그 언제부터 범죄적행위가 아니며, 지금도 역시 아니다.'

2008년 ; '부모들은 아이를 때리는 것이 합법적일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And that is part of the problem. The supporters of the anti-smacking law have confused the public by trying to mask its real effect. For example, compare these quotes from Green MP Sue Bradford
2007 '... it is already illegal to smack children'
2008 'Smacking has never been a criminal offence, and still isn't'
2008 '...parents need to accept that it is no longer legal to hit children.'

▶ 왜 이런 문제에 대해 국민투표를 실시하게 되었는지요?
Why is a referendum being held on this issue?

30만 명이상의 사람들이 서명을 통해 이 반체벌법을 개정하는 요구를 국민청원으로 제출하였고, 국민청원법에 의해 반드시 국민투표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More than 300,000 signatures were gathered on a petition demanding a Referendum on the law change, and under the Citizens Initiated Referenda law, this forced a Referendum to be held.

▶ 그래서, 국민투표의 질문이 무엇인가요?
What is the question being asked?

“부모로서 자녀에 대한 올바른 교육을 위해 가벼운 체벌을 가하는 것을 범죄행위로 간주함이 옳습니까?”

“Should a smack as part of good parental correction be a criminal offence in New Zealand?”

▶ 113명의 국회의원들이 이 법의 개정(즉 반체벌법의 시행)에 투표를 하지 않았었나요?
Didn't 113 MP's vote for the law change?

네. 그랬었지요. 사실 '양심 투표'이었어야 했는데, 당시 두 개의 주요정당인 국민당과 노동당의 당수들이 그 들의 소속의원들을 휘몰아 개정에 응하도록 조장을 한 것이었지요.

Yes they did. It was supposed to be a 'conscience vote' but the two major parties - Labour and National - were 'whipped' by their leaders (had to vote along party lines) to vote for the la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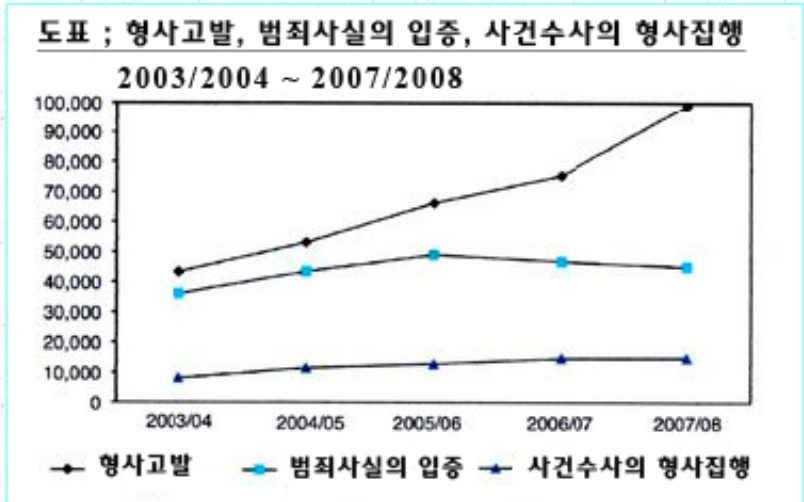
▶ 그런데, 이 법이 효과를 제대로 거두고 있는 것 아닌가요?

But isn't the law working?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견했던 바대로, 좋은 부모들이 법에 부당한 심문을 받는다는, 경찰에 의해 기소된다는, 또한 'Child, Youth and Family(CYF)'에 의해 아동과 일시적으로 격리되는 등의 피해를 받는 사례가 있지요. 그 예로, CYF에 통고된 사례가 그 법의 통과 후로 무려 30% 이상 폭증을 했습니다(본 도표 참조). 그런데 정작 수사를 요하는 사례는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단순히 가벼운 체벌에 불과한 일을 가지고서 귀중한 경찰과 CYF의 자원을 허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Definitely not. As predicted, good families have become victims of unwarranted investigations and prosecutions by police, and even temporary removal of children by CYF. For example, the number of notifications to CYF has seen an explosion of over 30% in the year since the passing of the law (see graph top line) yet the number of cases requiring further investigation (FARs middle line) has decreased. We are wasting valuable police and CYF resources investigating cases that simply aren't abuse.



▶ 그런데도, 경찰이 가벼운 체벌을 한 사람을 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But the police aren't investigating people for smacking, are they?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난 6개월간의 경찰수사보고에 따르면, '훈육을 위한 경미한 신체적 체벌'로 인해 조사받은 가족의 숫자가 2배가 증가함을 보였지만 실제로 구속영장을 받을 만치 중차대한 사례는 10%도 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 6개월에 단지 4건 만이 입건이 되었던 것이지요.

Once again, not true. A Police six month review early last year showed a 200% increase in families being investigated for 'smacking' and 'minor acts of physical discipline' yet less than 10% were serious enough to warrant prosecution. Over just a six month period, four 'minor acts of physical discipline' were prosecuted.

▶ 그럼 실제로 좋은 부모들이 수사, 입건, 자녀격리되는 등의 입증할 사례가 있는 겁니까?

Do you have examples of good parents being investigated, prosecuted, and children being removed from families?

네, 불행하게도 있습니다. 저희 website www.familyfirst.org.nz 에 보시면 많은 사례들이 있지요. 그 것들은 단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입니다. 위 CYF의 자료에 의하면 우리가 모르는 그 보다 많은 다른 사례들이 있을 것이라 봅니다.

Yes, unfortunately. There are plenty of examples on our website www.familyfirst.org.nz. These are just the ones that we are aware of. There will be plenty of others that we don't know about (as suggested by the CYF investigation figures above)

▶ 그러나, 그 법이 아동학대를 멈추는데 기여하지 않았을까요?

But hasn't the law helped to stop child abuse?

불행한 예기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법이 통과한 후에 놀랍게도(그 법을 제정한) Green 정당의 Sue Bradford의원도 "아동학대와 폭력이 이 나라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고, 나는 이 법령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시인을 하였습니다. 반체벌법의 시행 후 임에도 불구하고 시행되기 이 전과 같은 비율로 아동학대로 인한 12건의 사망이 있었습니다.

Unfortunately, no - and this comes as no surprise to Green MP Sue Bradford, who said after the law was passed "The epidemic of child abuse and child violence in this country continues - sadly. My bill was never intended to solve that problem." Since the passing of the anti-smacking law, there have been 12 child abuse deaths - continuing the same rate as before the anti-smacking law was passed.

▶ 그러면, 아동학대의 원인은 과연 무엇인가요?

So what are the causes of child abuse?

2003년과 2007년의 UNICEF보고서, 2006년의 CYF보고서에 보면 아동에 대한 부당행위사례로 ; 약물, 알코올 남용, 가족붕괴, 가난과 정신피폐, 생부모와의 별거, 편부모와의 생계, 취약가정, 궁핍한 주거환경, 저급한 교육의 제공, 미성년출산 등을 가장 보편적인 요인으로 들고 있습니다. 아동들의 안전과 후생이 꽤 높은 수준을 나타나고 있는 10개 선진국들 중 6개는 가벼운 체벌을 법으로 다루지 않는 것으로 UNICEF의 보고서에서 나와 있습니다.

UNICEF reports (2003) (2007) and a CYF report (2006) listed factors most commonly associated with the maltreatment of children including: * drug and alcohol abuse * family breakdown * poverty and stress * children not living with biological parents * single-parenthood / weak family ties * poor housing * low maternal education * low maternal age at birth.

In the UNICEF report, of the 10 top countries which were deemed safest and promoted the highest level of well-being for children, six hadn't banned smacking.

▶ 조사연구자료는 가벼운 체벌과 아동학대에 대해 무엇이라고 명기하고 있습니까?

What does the research say about smacking and child abuse?

2007년 오타고대학의 연구결과, 적절한 체벌을 받고자란 아이들이 전혀 그렇지 않은 아이들에 비해서, 비행, 약물 / 알코올복용, 성인범죄 그리고 학업성취 등에 있어 최소한 나은 결과를 보였음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크라이스처치의 의과대학의 연구결과 또한, 가벼운 체벌과 적절한 신체적체벌사이에는 그 결과에 있어 아무 차이가 없다고 발표되었습니다. 단지, '간혹있는 경미한 신체적체벌이 장기적으로 부정적 결과를 기인케한다는 주장은 잘 못된 것이다' 라고 말하지요.

A 2007 Otago University study found that children who were smacked in a reasonable way had similar or slightly better outcomes in terms of aggression, substance abuse, adult convictions and school achievement than those who were not smacked at all. And a study by the Christchurch School of Medicine found there was no difference in outcomes between no smacking and moderate physical punishment. They said, "It is misleading to imply that occasional or mild physical punishment has long term adverse consequences"

▶ 스웨덴인 1970년에 가벼운 체벌을 금지했는데, 어떤 효과가 있었든가요?

Sweden banned smacking in 1979. What effect did that have?

연구조사결과, 그 반체벌법이 오히려 악효과를 낳았다고 알려졌습니다. 그 법의 적용이래 7세 미만의 아동들에 대한 학대가 15배나 증가를 하였고, 청소년들의 다른 청소년들에게 가한 범죄적 만행이 무려 24배가 늘었다는 겁니다.

Research has shown that the Swedish smacking ban has done more harm than good. Since the ban on smacking, there has been more than a 15-fold (1505%) increase in physical child abuse against children under the age of seven, and more than 24 times as many charges of criminal assaults by young people against other youth.

▶ 그럼 왜 Barnardos와 Plunket같은 단체가 반체벌법을 옹호하는지요?

Why do groups like Barnardos and Plunket support the anti-smacking law?

이 단체들은 반체벌법이 뉴질랜드내의 아동학대를 줄일 것이라 잘 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이 아동학대의 현상을 우려하고 있는 것은 맞지요.... 우리도 그렇게 동의할 하니까요. 그러나, 아동을 바로 잡기 위해 가벼이 체벌하는 것은 학대와는 다르지요. 그들의 초점은 딴 곳에 있습니다. 그들은 좋은 부모를 범죄인으로 만드는 법에 반대를 해야 하는 것이고, 진정으로 학대의 원인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에 초점을 두어야 하는 겁니다. 그 단체의 일선에 담당관들은 그 사실을 알고 있지요.

These organisations mistakenly think that banning smacking will help reduce child abuse in New Zealand. Of course they're right to be concerned about our rates of child abuse—we can all agree on that—but a light smack for correction is not the same as abuse. Their focus is in the wrong place. They should oppose a law that makes criminals out of good parents and that takes the focus away from where it should be—on the real causes of child abuse. Their frontline workers know this.

▶ 그러면 해결책이 무엇까요?

So what's the solution?

첫째, 아이들의 잘 못된 점을 바로 잡으려는 의도로 학대가 아닌 가벼운 체벌을 가하는 참된 부모들을, 범죄인 취급하거나, 경찰과 CYF로부터 조사, 심문을 받게 할 개연성을 초래하는 형행의 범을 개정해야 합니다.

둘째로, Royal Commission(정부상급의 수임기구)를 세워, 보다 폭넓은 원인, 즉 가족붕괴, 가정폭력 그리고 아동학대 등을 문제화하고 규명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www.stoptheabuse.org.nz에서 볼 수 있습니다.

1. Fix the current law so that good parents who use a non-abusive smack for the purpose of correction are not deemed to be committing a criminal offence in the eyes of the law and liable to potential investigation and interrogation by police and/or CYF.

2. Appoint a Royal Commission to understand and address the wider causes of family breakdown, family violence and child abuse – for more details see www.stoptheabuse.org.nz

끝으로, 제일 중요한 문제는 뉴질랜드의 선민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국민투표는 바로 여러분의 견해를 정치인들이 경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In the end what matters most is that the voice of ordinary New Zealanders is heard! The Referendum means that the politicians must listen to your views.



So vote NO!

자! 'No' 라고 답을 하십시오.

Protect Good Parents

Tackle the Real Causes of Child Abuse

참된 부모들을 잘못된 법으로 부터 구제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동학대의 근본이 되는 원인을 발본해야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www.voteNO.org.nz 을 참조하십시오)